

에듀테크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2026/27 영양사 식품영양 관계법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3시간 50분 완성, 국시원 영양사 시험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PDF 전자책

도서명 : 영양사 식품영양 관계법규

ISBN : 979-11-7393-301-1

발간일 : 2026-07-22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5,000원



영양사 식품·영양관계법규

[목차]

- 제1편 식품위생법(p3)
- 제2편 학교급식법(p90)
- 제3편 국민건강증진법(p102)
- 제4편 국민영양관리법(p127)
- 제5편 원산지표시법(p139)
- 제6편 식품표시광고법(p152~177)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신설, 개정된 내용

제1편 식품위생법

(이하 법)

[목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 등

제7장 영업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약어]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청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군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처장등은 처장, 시도지사, 시군구

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합은 동업자조합

추적관리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첨가물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등은 기구, 용기, 포장

수입등은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기준/규격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인증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등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식품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

2. 정의

1) **식품**은 모든 음식물

-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

2)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가공/조리, 보존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등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 기구등 살균, 소독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 포함

3)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나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

일으켜서 얻은 물질

4) 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 물건

- 농업/수산업에서 식품 채취에 쓰는 기계/기구, 물건 위생용품 제외

가) 음식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시 사용하는 것

- 소분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

5) 용기/포장은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6) 공유주방은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7) 위해는 식품/첨가물, 기구등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있는 것

8) 영업은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판매하거나

기구등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이하 식품제조업등)

- 농업/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 제외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 영위하는 업 포함

9) 영업자는 영업허가 받은 자, 영업신고 한 자, 영업등록 한 자

10) 식품위생은 식품/첨가물, 기구등 대상 음식에 관한 위생

1)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 계속 음식물 공급하는(1회 5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다음의 급식시설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후생기관

2) 추적관리는 식품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식품의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시 식품을 추적해 원인 규명, 조치 할 수 있게 관리

3)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독소형 질환

4)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을 고려해 작성한 급식계획서

(다음은 26년 12월 31일 시행)

5) 유전자변형은 다음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등 유전자 변형

- a)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세포내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 b)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6) 비의도적 혼입은 농/축/수산물 등 생산, 수입, 유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된 농/축/수산물 등이 비의도적으로 혼입

3. 식품 등의 취급

- 가) 누구든지 판매 목적으로 식품/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함
- 판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이하 같다)
- 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룸

4. 허가 등 의제

- 다음은 정한 기간내 허가, 신고 수리, 등록,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미통지시 기간(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된 때 해당 처리기간)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수리, 등록한 것으로 봄
- 가) 영업 허가/변경허가
- 나) 변경신고, 영업신고/변경신고
- 다) 영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 라) 품목 제조 신고/변경신고(27년 5월 27일 시행)
- 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사) 추적관리 등록 신청, 변경신고
- 아) 동업자조합 설립인가 신청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1.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판매, 판매 목적 채취, 제조, 수입등 못함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인체 건강 해칠 우려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그 염려있는 것
- 단, 처장이 인체 건강 해칠 우려 없다고 인정하는 것 제외
 -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 오염 염려 있어 인체 건강 해칠 우려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 등 사유로 인체 건강 해칠 우려
 - 5)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중 안전성 심사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 부적합 인정
 - 6) 수입 금지된 것, 수입신고 않고 수입한 것
 - 7)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2.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 있는 동물,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 판매 목적 채취, 수입등 못함
 - 가)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나)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선모충증

3.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 행위 못함
 - 예외) 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 거쳐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시
 - 가) 기준/규격 미정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나) 상기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판매, 판매 목적 제조, 수입등 못함

4.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가. 처장은

1)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판매 목적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사항 고시

a)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b) 성분에 관한 규격

2) 기준/규격 미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상기 사항을 제출하게 해 처장 지정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나 다음 기관 (이하 **총리령상 시험/검사기관**) 검토 거쳐 기준/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기준/규격으로 인정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지자체가 축산물 위생검사 하기 위해 설립한 동물위생시험소

나. 수출할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 따를 수 있다

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판매, 판매 목적 제조, 보존,

수입등 못함

라. 처장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규격 인정 받은 자에 인정 취소 요

5. 권장규격(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

- 처장은,
가) 판매 목적으로 하는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등이 국민 건강에 위해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 필요시 기준과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 있는 성분 등의 권장규격 정함
나) 권장규격 정할 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 규격이나 다른 식품등에 규격이 신설된 유사한 성분 등 고려 요
- 심의위 심의 거침
다) 영업자에 권장규격 준수 요청 가능
- 미이행시 그 사실 공개 가능

6.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시 처장에 신청 요
나)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처장에 자료 제출해 기준 설정 요청 가능
다) 처장은 기준 설정시 행정기관 장에 자료제공 등 협조 요청 가능
-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7. 기준/규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가. 처장은

- 1) 중앙기관장과의 협의와 심의위 심의 거쳐 5년마다 수립/추진 할 수 있다
- 2) 관리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 요
- 3) 관리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중앙기관장, 지자체장에 협조 요청 가능
 -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 나. 내용은 식품등의,
- 기준/규격 관리 기본 목표, 추진방향
 -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 유해물질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 기준/규격 재평가
 - 기준/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기준/규격의 재평가 등

- 처장은
-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 재평가 요
-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 개정 등 조치 요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8조, 9조

1.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 건강 해칠 우려 있는 기구등과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 건강 해칠 우려 있는 기구등

판매, 판매 목적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영업에 사용못함

2. 기구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가. 처장은

1) 국민보건을 위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에 관해 다음 사항 고시

- 제조 방법 기준
- 기구등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2) 기준/규격 미고시 기구등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상기 사항을 제출하게 해 처장 지정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나 **총리령상 시험/검사기관** 검토 거쳐 기준/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기준/규격으로 인정 가능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규격 인정 받은 자의 인정 취소 요

나. 수출할 기구등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 따를 수 있다

다. 기준/규격이 정해진 기구등은 기준에 따라 제조

-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등은 판매, 판매 목적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못함

3. 기구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가. 처장은 기구등 제조시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이미 사용한 기구등을 다시 사용하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기준 고시

나. 기구등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재생원료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해 처장 인정 받음

- 예외) 합성수지를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하는 공정 거친 재생원료

다. 인정 받으려면 다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처장에 신청

-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
- 2) 재생공정
- 3) 오염물질 제거방법
- 4) 처장 고시 서류

라. 처장은

- 1) 인정 신청한 자에 재생원료의 안전성 확인 등 인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하게 함
- 2)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기준에 적합하면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하고, 인정서 발급 요
-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원료 인정 받은 자의 인정 취소 요

4.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등에의 사용 등 금지

- 누구든지 인정 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등 판매, 판매 목적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영업에 사용못함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4장 표시

11~12조

1. 변형식품등의 표시

가. 다음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은 변형식품임 표시 요

- 단,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변형식품등에 한정

-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2) 분류학에 따른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나. 표시해야 하는 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 판매 목적 수입/진열/운반, 영업에 사용못함

다. 이외 처장이 정함

(26년 12월 31일 부터)

1. 변형식품 표시

가. 다음 식품/첨가물은 변형식품임 표시 요

- 단,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첨가물에 한정

-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이하 변형식품등)
- 2) 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